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나51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나511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2294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숙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변론 종결 2021. 5. 7.

판결 선고 2021. 6. 2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2294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631,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0. 4.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8. 1. 24. 접수 제1190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피고가 변론종결 이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대체집행비용이 71,500,000원이 아니라 1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대체집행비용이

18,000,000원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소극재산의 합계 311,262,000원은 적극재산 255,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주식회사 D는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인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7쪽 '3의 가 2)나) ③'항의 "③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71,899,000원(= 52,999,000원 + 118,900,000원)"을 "③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71,899,000원(= 52,999,000원 + 118,900,000원)"으로, 11쪽 '1. 1동 건물의 표시'항의 "AB면"을 "AC"으로 모두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희석

판사오연정

판사허준서